##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9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구자근·김선교·박준태

강대식 · 김석기 · 유상범

박덕흠 • 인요한 • 박성민

배준영 · 조지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 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함(안 제38조제1항).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
- 3.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의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 <단서 삭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 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 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함된 사업 3. 「과학기<u>술기본법」 제11조</u>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 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 <u>소기업 분야의 사</u>업

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 정보화 사업

>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 업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공사가 포함된 사업

3.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 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 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 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 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 야의 사업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